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1년
예산차수 : 본예산
회계구분 : 식품진흥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(1) 설치근거 :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, 제62조

(2)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충당

(3) 설치년도 : 1991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및 활동지원

(2)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10년도 말 현재액 ⓐ	2011년도 조성계획			2011년도 말 현재액ⓔ = ⓓ + ⓐ	비 고
	수입 ⓑ	지출 ⓒ	증감 ⓓ = ⓑ - ⓒ		
5,089,415	4,234,000	6,044,740	△1,810,740	3,278,675	

(2) 재원조성 : 식품위생법 제82조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

(3) 지원기준 :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

(4) 지원대상 : 영업자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)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

식품위생에 관한 교육,홍보사업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교육,활동 지원

식품위생교육,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

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

그 밖에 식품위생, 국민영양,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